

교원 창업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교원 창업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교원의 창업 및 관련된 경직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라 함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 3항에서 정한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교원을 말한다.
2. '창업'이라 함은 본교 및 본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술 또는 본교 교원이 근무 중 습득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하여 본 규정에 의거 교내·외에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거 교원이 창업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교원창업자'라 함은 창업기업의 대표 또는 상근 임원에 취임한 교원을 말한다.
6.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본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 및 본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교원창업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에 관한 사항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6개월 이내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3. 교원창업자는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4. 교원창업자의 창업활동은 본교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교원 창업 시에 경직 허가에 대한 평가는 3년 단위로 실시한다.

제4조(교원창업자의 의무) ①교원창업자는 본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우선 수행하여야 하며,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창업기업은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 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완료하고 본교 산학협력단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 기간 및 그 이후에도 본교의 기밀을 제3자(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피고용자, 기업승계인, 주주 등)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2장 창업 절차 및 관리

제5조(창업신청 자격) ①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3년 이상 본교에 근속한 교원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처분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②재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최종 승인받은 경직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상 본교에 재직한 자여야 한다.

제6조(창업신청 및 승인) ①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소속 학부(과)장 및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 창업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2. 교원 창업 경직허가 신청서[서식 제2호] 1부.
3.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서식 제3호] 1부.
4. 예비벤처인증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창업의 경우) 1부.
5. 실험실 사용 허가원(실험실창업의 경우)[서식 제4호] 1부.
6.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공장등록이 필요한 경우)[서식 제5호] 1부.

②교원의 창업신청에 대하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적위원 2/3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인정되면 총장의 최종 승인으로 창업 승인이 결정된다.

제7조(경직신청 및 허가) 교원의 창업 승인이 결정되면 주관부서는 교원창업자의 경직 승인을 교무처에 요청하며, 교무처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경직신청을 처리한다.

제8조(휴직신청 및 허가) 교원은 필요시 창업활동을 위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승인 및 허가의 취소)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승인 및 검직을 허가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교 교원의 창업 승인 및 검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사유와 현저하게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을 허가한 후 6개월 이내에 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3. 책임시간 미준수 또는 강의평가 하위 10% 이내인 경우
4. 본교와 이 규정이 정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직무발명 및 관련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이전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6. 창업기업이 폐업할 경우
7. 본교의 관련 규정을 악용하여 본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8. 본교의 재정적 기여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총장이 창업의 승인 및 검직 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기술이전 계약) 직무발명 및 본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1조(창업변경 신청) 교원창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1개월 이내 본교 산학협력단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업태 등)
2.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된 경우
3. 사업자 말소
4. 기타 창업기업의 변경사항

제3장 실험실 창업

제12조(실험실창업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실험실창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환경저해 업종
2. 과도한 에너지 사용 업종
3.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

4. 기타 실험실창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제13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실험실창업 교원은 목적물 내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범위 내에서 설치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의무) 실험실창업 교원 및 참여자 등의 과실로 인하여 본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적 기여

제15조(재정적 기여) ① 교원 창업자는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에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

② 기업의 주식 일부를 무상증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식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본교 산학협력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제16조 (주식 무상증여) ① 무상으로 증여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하고 당해주식의 주당 가치 산정은 액면가로 하며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원창업 승인일로부터 270일 경과시점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1. 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3%

2. 자본금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2.5%

3.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발행주식총수의 2%

③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을 타인에게 영업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이 5억원까지는 양도금액의 3%,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금액의 2%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다.

④ 주식 무상증여시점 이전에 당해 기업이 흡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합병대가(합병법인의 교부주식 또는 현금 등의 합병교부금)의 종류별로 각각 3%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산학협력단에 무상증여한다.

⑤ 교원창업자는 동조 제2항에 의한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무상증여분에 대한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주권을 인도해야 한다. 단, 당해기업이 주권 미발행기업인 경우에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주주확인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식 무상증여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무상증여를 면제한다.

1. 창업자가 창업승인일로부터 270일 이전에 당해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2. 당해법인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제18조 (산학협력 발전기금 출연) ① 제1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무상증여할 수 없는 교원창업자는 본교 산학협력 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 ② 교원창업회사는 창업 3년 이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 발전기금으로 매년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무상증여로 재정적 기여 방법을 전환한다.

제5장 기타

제19조(임용 전 창업 교원) ① 본교 임용 전 창업을 한 교원은 별도의 창업신청은 없으나, 교원 창업 경력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임용 전 창업 교원이라도 재정적 기여도는 본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준용규정) 교원창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내 관련 규정과 관리기관 지침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범위) 제4장 재정적 기여 부분을 제외한 본 규정의 모든 내용은 기존 창업 교원에게도 적용된다.

[서식 제3호]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	
창업 회사명	
신청인(대표자)	

※ 유의사항

1. 본 계획서의 보충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진 또는 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
2.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3.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사업계획 요약서

아이템명			
적용분야	대표자명		
	창업 회사명		
사업개요			
보유기술			
시장분석			
사업화 추진계획			

1. 창업사업 개요

1-1. 창업동기	
-----------	--

1-2. 참여인력의 전문성	
1-3. 사업내용 및 특성	

2. 개발기술

2-1 기술개발 수준	
2-2. 기술의 파급효과	

3. 시장분석

3-1. 목표시장 규모 및 전망	
3-2. 사업화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	

3-3. 제품 경쟁력	
3-4. 성장 가능성	

[서식 제5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실험실 공장</div> <div style="font-size: 18px;">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변경 </div> <div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승인 신청서</div> </div>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실험실 공장 내용	실험실 총면적(m ²)				생산시설 면적(m ²)		
	제조시설 명세						
사업 계획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업 내용	업종	생산 제품명		가동 예정일		
변경 내용	구분	생산시설 면적(m ²)	제조시설명세	대표자 성명	업종	생산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p>「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실험실 공장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8px;">20 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한국항공대학교 총장 귀하</p>							

첨 부 : 제조시설 배치도 1부.